

청주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20가단399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 고 1. A

2. B

3. C

4. D

변 론 종 결 2022. 3. 11.

판 결 선 고 2022. 3. 25.

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29,645원 및 그 중 30,232,316원에 대하여 2020. 3. 16.부터 2021. 3. 18.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경북 칠곡군 E 대 238㎡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피고 C이 2019. 11. 1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9. 11. 15. 접수 252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D는 피고 A에게 제2항 기재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20. 1.

17. 접수 제1350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C, D의 관할 위반 항변 판단

피고 C, D는 자신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가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에서 공동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금전채권에 관한 것으로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이고, 원고는 공동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관련재판적 규정에 따라 공동피고들에 대한 의무이행지 법원인 이 법원에 피고 C, D에 대한 청구도 관할권이 있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사고, 대위변제

○ 피고 A는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2017. 11. 24.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29,750,000원, 보증기한 2018. 11. 21.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의 위 신용보증 하에 F은행으로부터 3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피고 A가 2019. 11. 22. F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F은행의 청구에 따라 2020. 3. 16. 피고 A의 채무 30,232,31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보전을 위해 대지급금으로 709,869원을 지출하였고, 미수추가보증료 187,460원이 발생하였으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 이후 연 10%이다.

나. 재산처분

○ 피고 A는 피고 C에게 2019. 11. 14. 주문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9. 11. 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 C은 피고 D에게 2020. 1. 17. 위 부동산 중 1/2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날 위 1/2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3항 기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 A는 위 부동산 매매일(2019. 11. 14.)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그렇다면 피고 A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1,129,645원(= 대위변제금 30,232,316원 + 대지급금 709,869원 + 미수추가보증료 187,46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0,232,31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3. 1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고 A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20. 3.

16.(원고의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일) 성립하였으나,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11. 14. 당시 이미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 A의 채무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9. 11. 22. 신용보증사건의 발생으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결국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피고 C,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매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는 당시 이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C과 전득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선의의 수익자, 전득자 항변

피고 C은, 자신은 피고 A가 운영하던 PC방의 고객이었는데 피고 A가 ‘주문 기재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고 하기에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 A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9,000,000원에 매수한 것일 뿐, 자신은 피고 A가 위 매매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고, 피고 D는, 친구인 피고 C으로부터 위 부동산 이야기를 듣고 역시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 C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대금 4,500,000원에 매수한 것일 뿐, 자신은 피고 A가 피고 C과의 위 매매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역시 알지 못한 선의의 전득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¹⁾ 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살피건대, 피고 C, D가 위 각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 부동산 내지 그 1/2지분을 각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피고 A와 피고 C 사이의 위 부동산 매매가 피고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 피고 D의 선의의 전득자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A와 피고 C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에게, 피고 C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D는 위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3항 기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

1) 이때 전득자의 악의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